



면책

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아래 서명자, 뉴스랙 또는 뉴스랙(들)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소유자인 _____ 은/는 뉴스랙 설계나 배치, 설치, 운영, 유지보수 또는 해체 중 생략된 행위의 결과에서 기인 또는 발생한 사망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해 개인 및 신체 상해에 대한 모든 손실, 비용 손해, 비용, 청구, 판결 또는 책임으로부터 그러한 손해가 뉴욕시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뉴욕시와 뉴욕시를 대신해 일하는 사람들을 변호, 면책 및 보호할 것에 동의합니다.

_____ 서명

_____ 날짜

_____ 정자체 이름

_____ 회사

뉴욕주 뉴욕시)
)ss.:
뉴욕 카운티)

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, 앞서 내용에서 언급된 사람이며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_____ 은/는 직접 본인 앞에서 자신이 언급된 용도로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바입니다.

_____ 공증인 또는 증서 위원